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문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

□ 사업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¹⁾
 -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 제8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절차 등)

1) 이하, “노인일자리법” 이라고 함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 규모	신규 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개소 당 최대 3억 원	최소 5명 이상
	노인친화 기업·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개소 당 최대 2억 원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신규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	지정연도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 최대 2억원 지원	최소 5명 이상
			1차 연도 2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	
	노인친화 기업·기관	최대 2억원	지정연도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비용 등 최대 1억원 지원	최소 5명 이상¹⁾
			1차 연도 2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	

주1) 노인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은 노인친화기업 공모 신청 당시 '전년도 말 기준 노인고용률'에 포함된 기(既)고용 노인은 제외

○ 사업 관리기간 : 지정연도 + 5년*

* (예시) '26. 5. 1. 선정된 기업의 사업 관리기간: '26. 5. 1. ~ '31. 12. 31.

○ 보조금 교부방식

-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1차·2차 연도)

○ 보조금 교부시점

- '지정연도'는 대응투자금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

*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보조금 지원 총액(분할교부 총액)으로 가입

- '1차·2차연도'는 이행계약서 상 고용 목표인원(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에 따라 교부

※ 이행계약서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고용 목표인원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

※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의무는 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발생

< 고용 인원 산정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

II.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분기 접수 및 선정	2분기 접수 및 선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공고일 ~ 3. 31.	'26. 4. 1. ~ 6. 30.
예비 심사	• 적격 심사 등 진행 * (내용) 참여자격 및 기업 안정성 등 전반 검토	공고일 ~ 3. 31.	'26. 4. 1. ~ 6. 30.
1차 심사	• 공모 1차 심사 진행 * (대상) 공모서류를 제출하고 예비심사를 통해 적격여부가 검증된 기업 * (내용) 기업 현장실사	'26. 4. 1. ~ 4. 10.	'26. 7. 1. ~ 7. 10.
2차 심사 (최종 심사)	• 공모 2차(최종선정) 심사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대면	'26. 4. 27. ~ 4. 30.	'26. 7. 20. ~ 7. 24.
공모선정 통보	•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 '26. 5. 8.	~ '26. 8. 7.
이행계약체결 (기업설립)	•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 교육 * (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26. 5월중	'26. 8월중
대응투자 이행	• 이행계약 체결 <노인 채용기업> 1차 이행계약 체결(선정기업) - 기업창업(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2차 이행계약 체결 <노인친화기업·기관> 이행계약 체결	선정 후 30일 이내 1차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선정 후 30일 이내 -	
보조금 지원	• 대응투자 이행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대응투자 이행 확인 후	

III. 지원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공모 신청 가능
 - ※ 노인 채용기업 설립(창업)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통요건
 - (사업운영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수)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수 등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고용)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 ※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 감사 제외

□ 신규 노인 고용 의무

-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된 해(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여야 함

※ 신규 노인고용은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필수)

□ 대응투자

-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기준은 참고4 참조)

< 대응투자 인정 기준 >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무상제공 방식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전액 인정)
 -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감정가액 환산적용)
- 대응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선 대응투자→후 보조금 지원)

□ 공모참여 제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 2011~2025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약해지(지정취소)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의 경우 공모 신청 불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
 -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 지정 이후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 ※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된 기업으로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III.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서식 모음(별첨) 참조

구분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기업(법인) 현황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노인 고용 인원 수)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건적서, 가격 조사 자료 등)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PDF 및 엑셀 다운로드하여 모두 제출 (노인 고용 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 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 제출 공통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6. 30.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1분기 심사 접수마감) 공고일 ~ 3.31.(화) 18시까지

- (2분기 심사 접수마감) 4. 1.(수) ~ 6. 30.(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 출 처) <https://kordisenior.gcontest.co.kr>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접수(파일별 암호화 필수)**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산업재해를 확인서'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 제출 필수**

○ (관련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공모 및 사업계획 컨설팅 문의 / 서류접수 확인 >

권역	제출처	연락처	대표번호	담당자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송레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02-6329-6921 02-6329-6922	1833-7128	경영 컨설턴트
부산·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3층	070-4372-3061 070-4372-3066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93 070-7875-2477		
경기·인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송레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02-6329-6923 02-6329-6924		
광주·전남 전북·제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6층	062-714-1293 062-525-5782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042-719-1380 042-719-1387		

※ 대표번호 이용 시 발신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영컨설턴트에게 자동 연결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IV. 심사절차

※ 선정심사는 총 2회 걸쳐 진행

- 1분기(공고일~3.31. 18시 접수마감): 4월 중 심사(5월 초 선정)
- 2분기(4.1~6.30. 18시 접수마감): 7월 중 심사(8월 초 선정)

□ 심사방법

○ 예비 심사 [서류]

- (심사내용) 공모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등 신청 서류 전반에 대한 정합성 사전 검증 실시

○ 1차 심사 [현장]

- (심사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노인 채용기업) 필요 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심사기준) 1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결과통보) 1차 평가 통과 기업(기관) 개별 통보

○ 2차 심사 [제안발표]

- (선정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대면, 기업 제출 사업계획 내용 평가

<신청기관 발표평가>

- 2차 심사는 신청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 **발표 시간 10분,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 ※ 발표자료는 사전 제출한 파워포인트만 활용(동영상, 유튜브 활용 불가)
- 제안 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선정(70점 미만 탈락)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선정방법)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 2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누리집(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및 기업(기관) 개별 통보

V. 기타사항

- ☐ 본 공고문의 노인 채용기업은 노인일자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함
- ☐ 본 공고문의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함
- ☐ 본 공고문의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이 노인일자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서의 명칭은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서」로 함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 추가 질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로 문의

<참고 1> 공모추진 세부 일정

<참고 2>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안)

<참고 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참고 4> 심사기준 및 지표 안내

<참고 5>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1

공모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분기> 접수 및 선정	• 1분기 공모신청	공고일 ~ 3. 31.
	• 예비 심사	공고일 ~ 3. 31.
	• 1차 심사	'26. 4. 1. ~ 4. 10.
	• 2차(최종선정) 심사	'26. 4. 27. ~ 4. 30.
	• 공모선정 통보	~ '26. 5. 11.
<2분기> 접수 및 선정	• 2분기 공모신청 접수	'26. 4. 1. ~ 6. 30.
	• 예비 심사	'26. 4. 1. ~ 6. 30.
	• 1차 심사	'26. 7. 1. ~ 7. 10.
	• 2차(최종선정) 심사	'26. 7. 20. ~ 7. 24.
	• 공모선정 통보	~ '26. 8. 7.

※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안)

-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실 보수·설치,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등 포함
-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 60세 이상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등

구분	내용
신체 부담 경감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 대차 제공 ◦ 중량물 취급 시 비슷한 높이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설비 개선 ◦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설비 구축
보조기구 사용	◦ 근력 부하가 큰 경우에는 카트 등 간이 운반 기구 제공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기구 제공
사고 방지	◦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공사, 추락 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 설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제공 ◦ 경고표시판 설치 ◦ 작업장 및 통로에 밝은 조명 설치 ◦ 혹한·혹서기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기타	◦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60세 이상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등 실시 ◦ PC,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고령 근로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고용인원 산정 방법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고령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 ▶ 근무개월 수 미 충족 퇴사자의 경우, 총원 인력의 근무월수와 합산하여 충족 시 실적 인정함 (예시: 60세 이상 근로자 A 4개월 근무 + 총원된 60세 이상 근로자 B 3개월 근무 ⇒ 고용인원 1명 인정)
- ▶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전에 고용되어 있던 60세 이하 직원이 선정 공고일(보건복지부 선정공고일) 이후 60세가 되었을 경우,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① 기 고용 노인(공모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내 근로자)
 - ②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형태가 일용·파견·도급 관계인 경우
 - ③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기임원 등
 - ④ 고용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 후 재고용한 경우

□ 보조금 지급 방식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별 이행계약서에 따라 연차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2차연도의 경우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고용 목표 인원 달성 전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 당해연도 고용실적 달성여부 최종 확인 후 미달성 시 미달성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반환

- ▶ (지급대상) 이행계약서 상 당해연도 연차별 보조금 교부 대상기업
- ▶ (지급방식) 3년간 교부
 - (지정 연도) 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100%(최대 2억원), 노인친화기업·기관의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개선)비용(최대 1억원)
 - (1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2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 (지급자격) 신청 대상 기업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대응투자금 이행 완료(해당 시)
 - 이행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수)
 -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완납 등 납세 의무 이행(필수)

참고4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평가 기준

- 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 내용, 수행 능력 (기업 재무 건전성 평가, 사업화능력 평가), 사업계획, 사업 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

- (1차 심사) 서면 평가 및 현장평가

※ (노인 채용기업) 필요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2차 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평가 지표

○ 1차 심사 [현장]

- (선정기준)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1차심사 기준>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수행능력 (영리기업용)	• 기업 건전성(60점) - 부채비율(12.5), 유동비율(12.5), 매출액 증가율(12.5), 매출액 영업이익률(12.5), 기업신용평가등급(10) • 사업화 능력(4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10), 전문 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15), 사업화 인프라 보유(15)		100점
수행능력 (비영리기업용)	• 사업화 능력(10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25), 운용 인력 전문성(25), 기술성 보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100점
가점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노인 채용기업)신설 예정 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3점

※ 1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차 심사 세부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수행능력평가 ※ 영리기업용	기업 건전성 (60점)	• 부채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2.5점
		• 유동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2.5점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2.5점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2.5점
		• 기업 신용평가등급 *주1 ※ 평가기준: (10점) A- 이상, (9.8점) BBB+, (9.6점) BBB0, (9.4점) BBB-, (9.2점) BB+, BB0, (9.0점) BB-, (8.8점) B+, B0, B-, (7.0점) CCC+ 이하	10점
	사업화 능력 (4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인력 보유 여부 등	10점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자격·경험 등), 보유기술 경쟁력, 지적재산권 등	1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15점
합 계		100점	
수행능력평가 ※ 비영리기업용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인력 보유 여부 등		25점
	• 운영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 근속연수 등		25점
	• 기술성 보유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2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25점
	합 계		100점
가점 (3점)	• 고령자 창업 여부 - (노인 채용기업)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유의사항 - 가점을 받은 기업에서 노인 채용기업 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시점에 대표자가 60세 이상이 아니거나, 지정 후 3년 이내에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 시 계약 해지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노인 채용기업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적용.		3점

※ 1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 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주1)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세부기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사업 공고 당시(신청서류 접수일 포함) 평가된 내용으로 한다.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득점을 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업(기관)의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로 평가한다.

○ **2차 심사 [제안발표]**

- (선정기준)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 중 상위 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2차심사 기준>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사업내용 (30점)	• 사업 내용 적합성, 노인 업무 적합성,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100점											
사업계획 (2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35점)	• 고용 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대응투자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table border="1"> <tr> <th>대응투자 비율</th> <th>점수</th> </tr> <tr> <td>100% 이상</td> <td>15점</td> </tr> <tr> <td>90%이상 100%미만</td> <td>12점</td> </tr> <tr> <td>70%이상 90%미만</td> <td>9점</td> </tr> <tr> <td>50%이상 70%미만</td> <td>6점</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3점</td> </tr> </table>		대응투자 비율	점수	100% 이상	15점	90%이상 100%미만	12점	70%이상 90%미만	9점	50%이상 70%미만	6점	30%이상 50%미만
대응투자 비율	점수												
100% 이상	15점												
90%이상 100%미만	12점												
70%이상 90%미만	9점												
50%이상 70%미만	6점												
30%이상 50%미만	3점												
합 계		100점											
가점* (최대 5점)	• 최근 2년 이내(24.1.1.~공모접수일 현재)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	3점											
	• 아래 해당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기관 ※ 공모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보건복지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성평등가족부) -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점 1점 1점 1점 1점											

※ 2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 (2차 심사 세부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30점)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사업계획 (2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0점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0점	
사업효과 (35점)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5점	
	•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효과 ※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례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고령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15점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 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대응투자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신청 보조금*100%		15점
	대응투자 비율	점수	
	100% 이상	15점	
	90%이상 100%미만	12점	
	70%이상 90%미만	9점	
	50%이상 70%미만	6점	
30%이상 50%미만	3점		
합 계			100점
가점 (최대 5점)	• 최근 2년 이내('24.1.1.~공모접수일 현재)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 <정년 연장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 1) 개정 전·후 취업규칙 (정년 연장 내용에 대한 신·구 대비표 첨부) 2)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고용노동부 제출)	3점	
	• 아래 해당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기관 ※ 공모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보건복지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성평등가족부) -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점 1점 1점 1점 1점	

※ 2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참고5

고령자친화기업 예산 편성 기준

□ 노인 채용기업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 예산총액의 30% 이내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투자비	60세 이상 노인의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임차(리스)는 지양하며, 취득 권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 추진 권장
	임차비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사용 불가
	재료비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용 등 ※ 재료비는 예산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 가능, 재료비 사용 시 검수조서 구비 필수
	교육훈련비	60세 이상 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60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비
	홍보활동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 등)
	사업비성 경비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비용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등 건강관리비 ※ 노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목적에 집행
관리 운영비 ※ 예산총액의 10% 이내	여비(국내)	60세 이상 노인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은 보조금,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예산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 예산총액의 30% 이내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투자비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임차(리스)는 지양하며, 취득 권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 추진 권장
	임차비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사용 불가
	교육훈련비	60세 이상 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60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비
	홍보활동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 등)
	사업비성 경비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비용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등 건강관리비 ※ 노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목적에 집행
관리 운영비 ※ 예산총액의 10% 이내	여비(국내)	60세 이상 노인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은 보조금,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예산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